

G20과 일본의 금융정책

박 광 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I. G20 정상회의
- II. 자민당 아소 다로(麻生 太郎) 내각의 금융정책(금융 시장안정화 · 금융 시스템 유지 대책)
 - 1. 정부의 대응
 - 2. 일본은행의 대응
- III. 민주당 정권의 금융정책
 - 1. 금융위기에의 대응
 - 2. 건전한 금융시장의 육성
 - 3. 공개회사법의 제정
 - 4.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 시장법의 제정
 - 5. 중소기업대상 금융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 6. 지역금융원활화법의 제정
 - 7. NPO뱅크, 소규모인 공제의 부담 경감
- IV.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안
 - 1. 본칙
 - 2. 부칙

I. G20 정상회의

G20 3차에 걸친 정상회의의 내용에서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제가 논해졌다.

- 1차 : - 글로벌유동성 공급 확대
 -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필요성
- 2차 : -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제공조
 - 글로벌 유동성 확충
 - 보호무역주의 경계
 - 최빈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안전망 확충
- 3차 : - 금융규제 강화
 - 보호무역주의 방지
 - IMF 개혁
 - 글로벌 불균형 해소(위기재발방지를 위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
 - 출구전략(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며, 출구전략은 경제회복 확인 후 시행)

II. 자민당 아소 다로(麻生 太郎) 내각의 금융정책(금융시장안정화·금융 시스템 유지 대책)

이전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내각은 4차에 걸친 경제대책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금융 시스템의 유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은행(日本銀行)도 또한 동일한 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종전 내각과 일본은행 양자를 나누어서 각각의 대책과 그 논점을 정리한다.

1. 정부의 대응

2008년도 제1차 보정예산(동년 10월 16일 성립),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2009년 1월 27일 성립), 2009년도 예산(동년 3월 27일 성립), 2009년도 보정예산(동년 5월 29일 성립)에 의한 정부의 시책은 아래와 같다.

- ①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에 의한 위기대응 업무
- ② 중소기업에의 긴급보증제도
- ③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안전네트워크 대부형태의 확대
- ④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은행의 용자·보증의 추가(3조 엔)
- ⑤ 주택·부동산 시장대책(0.2조 엔)

- ⑥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자본참가 형태의 재설치와 확대(12조 엔)
- ⑦ 은행 등 보유주식 매입의 재개와 확충(20조 엔)
- ⑧ 시가회계의 일부 완화
- ⑨ 금융기관 용자의 검사·감독(금융검사 매뉴얼 재검토) 등이다.

이 중 ⑥에서는 개정 금융기능강화법(2008년 12월 12일 성립)에 의해 국가의 자본참가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본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의 금융중개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입제도를 재개하고, 그 범위를 당초의 2조 엔으로부터 12조 엔으로 확대하였다. ⑦에 있어서는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에 의한 주식취득을 재개하고, 동 기구의 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범위를 20조 엔(종래는 2조 엔)으로 하였다. 또 ⑧, ⑨는 금융기관에 의한 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대책은 급박한 경제위기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황이어서, 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었다.¹⁾

2. 일본은행의 대응

(1) 금융정책면의 조치(유동성대책을 포함)

- ① 정책금리의 인하
- ② 금융시장 안정화
- ③ 기업금융의 원활화

(2) 금융시스템면의 조치

① 금융기관 보유 주식의 매입

2009년 2월 은행보유주의 매입을 4년 반 만에 재개하고, 2010년 4월까지의 사이에 1조 엔을 한도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보유주식의 하락에 의한 자기자본 감소로 용자압박에 은행이 빠지는 것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금융기관 중 열악한 론 인수

2009년 3월로 결정된 1조 엔 규모의 은행자본의 증강지원책이다. 이렇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일본은행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비상시' 대책을 내놓고 있으

1) 「検証 資金繰り支援策(中)」『日本経済』2009.8.14.

며, 동시에 시장기능의 발휘, 일본은행 재무의 건전성, 엔의 신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일본은행의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²⁾

Ⅲ. 민주당 정권의 금융정책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금융정책을 내놓았다.

1. 금융위기에의 대응

미국에서 발단 된 금융위기는, 일본기업·가계의 자금유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기업·가계의 자금유통을 유지·지원하기 위해서,

- ① 신용보증의 대상업종 확충
 - ② 중소기업대상 검사 매뉴얼의 탄력화³⁾
 - ③ 주택융자 등의 상환조건 완화를 지원
- 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한다.

2. 건전한 금융시장의 육성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를 개편하고, 독립성이 높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폭넓은 금융상품거래를 감시하는 ‘금융상품거래 감시위원회’(일본관 FSA)를 창설하는 동시에,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일본의 금융시장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축으로부터 투자에’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투기관계자에게 교란되지 않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

3. 공개회사법의 제정

주식을 공개하고 있는 회사 등은 투자자, 거래처나 노동자, 지역 등 각양각색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요구된다. 공개회사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정보공개나 회계감사 등을 강화하고, 건전한 통치(기업통치)를 담보하는 공개

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世界同時不況下の経済対策と課題”, 国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NUMBER 647, 2009.9.18., 5~6쪽.

3) 이자 지불이 행하여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불량 채권에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공개회사법은 상장회사나 그것에 준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업의 통치에 대한 투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징적인 2가지 점은 이사 중 사외이사의 인원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과 감사역회(또는 감사위원회)에 노동조합 등에서 종업원 대표를 최저 1명 이상은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1명(one-man) 사장의 독재 등 사내이사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사회가 막아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후자도 경영진에 대하여 제3자가 항의하는 구조의 하나로서, 종래 감사역회는 이사회에 비해서 발언권이 약했지만, 감사역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공개 회사법에는 자회사의 중요자산매각 등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모회사 주주총회에서 행하는 제도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포괄적인 금융 서비스 · 시장법의 제정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 · 판매되고, 금융상품에 관한 분쟁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은행 · 증권 · 보험 · 상품(현물 · 선물) 회사 등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 횡단적인 투자가보호법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5. 중소기업대상 금융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보에 치우치지 않고 현금흐름(cash flow)에 중점을 둔 용자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대상 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조치 등을 강구하고, 대출거부 등을 해소시킨다.

6. 지역금융원활화법의 제정

지역에의 공헌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과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금융원활화법」을 제정한다.

7. NPO뱅크, 소규모인 공제의 부담 경감

시민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복지나 환경 등의 지역활동에 용자하는 NPO뱅크

와 같은 소규모·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대금업법의 자산요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다루기 어려운 특정 리스크에 대응한 보험이나 저렴한 위험이전의 수단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사회적 의의를 소유하는 소규모·단기의 ‘자주공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법상의 보험업과 구별한다.

IV.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안

1. 본칙

(1) 목적

이 법률은 최근의 경제금융정세 및 고용 환경 아래에서의 일본의 중소기업자 및 주택자금차입자의 채무의 부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업무의 건전과 적절한 운영의 확보를 배려하면서, 중소기업자 및 주택자금차입자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정하는 것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이것을 통한 고용의 안정 및 주택자금차입자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더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금융기관, 중소기업자, 주택자금차입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

(3) 금융기관의 대응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공에 관한 대응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특성 및 그 사업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유연하게 이것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 관계).

2) 중소기업자에게서 채무의 변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의 경감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

- ①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자금의 대부(이하에 있어서 단지 '대부' 라고 말한다.)에 관계되는 채무를 소유하는 중소기업자(신용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자회사, 은행의 모회사, 대회사, 대회사의 자회사 등을 제외한다. 이하에 있어서도 같다.)로, 해당 채무의 변제에 지장이 생기고 있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부터 해당 채무의 변제에 관계되는 부담의 경감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사업에 관한 개선 또는 재생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해당 대부조건의 변경, 구 채무의 차환(借換), 해당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취득으로 해당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등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자로부터 특정인중 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받은 특정인중 분쟁해결사업자보다 해당 특정인중 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할 것인가 아닌가의 확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사업에 관한 개선 또는 재생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해당 특정인중 분쟁해결절차의 실시를 의뢰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기업재생 지원기구가 지원결정을 행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채권에 대해서, 동 기구에서 매입신청 등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사업에 관한 개선 또는 재생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에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금융기관은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대부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을 소유하는 것 이외의 금융기관,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부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의 보증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협회 등 해당 중소기업자에 관한 중소기업 재생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인정지원기관이 있을 때에는 그 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3) 주택자금차입자에게서 채무의 변제에 관계되는 부담의 경감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의 대응

- ①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의 대부에 관계되는 채무를 소유하는 주택자금차입자이며, 해당 채무의 변제에 지장이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변제에 관계되는 부담 경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자금차입자의 재산 및 수입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될

수 있는 한 해당 대부조건의 변경, 구채무의 차환 등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금융기관은 위 ①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에 관련되는 주택자금차입자에 대하여 주택자금의 대부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을 소유하는 것 외의 금융기관, 독립 행정법인주택금융지원기구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5조).

(4) 금융기관에 의한 방침의 책정, 설명서류의 열람, 행정청에의 보고 등 대응

1) 조치의 실시에 관한 방침의 책정 등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자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에 관계되는 부담경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의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의 실시에 관한 방침의 책정, 대응조치의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체제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2) 대응 조치 등에 관한 설명서류의 열람

금융기관은 6월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마다 대응조치의 상황 및 체제정비 등의 조치의 개요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설명서류를 작성하고, 영업소 등에 비치,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제7조).

3) 행정청에의 보고 등

- ① 금융기관은 6월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마다 대응조치 등의 상세한 사항을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내각 총리대신 등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내각 총리대신은 대체로 6월에 1회 보고 및 통지를 정리하고, 그 개요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제8조 관계).

4) 검사 및 감독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취지의 존중

행정청은 은행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의 실시에 즈음하여 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제9조).

(5) 정부의 책무

1) 금융기관에 의한 대응 조치의 실시에 관계되는 정부의 책무

정부는 금융기관이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면서, 적절하고 원활한 신용제공에 관한 대응 및 중소기업자 등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의 경감 신청이 있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의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운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10조 관계).

2) 신용보완사업의 충실을 위한 조치 등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제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용보증협회가 행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신용보완사업의 충실에 관계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정부는 신용보증협회에 있어서의 인적 체제정비 등 중소기업자에 관한 신용보완사업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 관계).

(6) 기타

정령의 위임규정, 행정청을 정한 규정, 권한 위임규정, 벌칙 규정 등 소요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다(제12조~18조).

2. 부칙

(1)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시작해서 1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상기(4)의 1)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시작해서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2) 실효

이 법률은 2011년 3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을 갖는다. 단, 같은 날까지 행하여진 채무의 변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의 경감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서는 같은 날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소유한다.

그 외, 이 법률의 실효에 따른 필요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2조).

(3)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3조 관계).